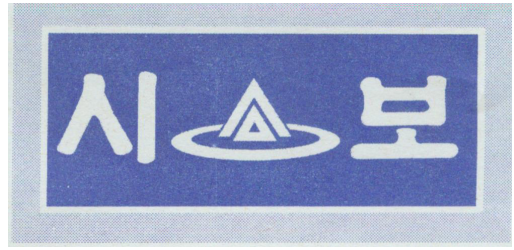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428호 2011. 7. 15.(금)

【고 시】

- 제2011-71호 월미 농공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1

【공 고】

- 제2011-692호 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9
- 제2011-700호 제10회 공주시 응진문화상 시상계획 공고 36
- 제2011-702호 공인 폐기 공고 37
- 제2011-704호 공인 신조 공고 38
- 제2011-705호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공고 51

회 람								
--------	--	--	--	--	--	--	--	--

공주시 고시 제2011-71호

월미 농공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우리시 월미동 47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월미농공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07월 12일

공 주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월미 농공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우리산업개발(주) 대표 신흥섭
- 주 소 : 충남 공주시 신관동 340-10번지 덕성상가 2층

3. 농공단지의 지정목적

- 농공단지조성을 통한 농외소득원 개발 및 고용인력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도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나. 위 치 : 충남 공주시 월미동 산47번지 일원
- 다. 면 적 : 149,684.0㎡ (당초 : 138,070.0㎡, 증 11,614.0㎡)

5.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 개발기간 : 2008 ~ 2011년 12월 31일

나. 방 법 : 민간개발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가. 주요유치업종: 식료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기타운송 장비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나. 유치업종배치계획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중 분 류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당초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138,070.0	증) 11,614.0	149,684.0	100.0	100.0		
합 계				108,530.0	증) 11,262.7	119,792.7	78.6	80.0		
산업 시설 용지	A1-1	A1-1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9,864.0	감) 14.0	9,850.0	7.1	6.6		
	A2-1	A2-1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7,174.0	감) 1.8	7,172.2	5.2	4.8		
	A3-1	A3-1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3,023.0	감) 348.0	32,675.0	23.9	21.8		
	A3-2	A3-2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234.0	증) 53.4	2,287.4	1.6	15		
	A4-1	A4-1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5,620.0	증) 12,017.6	30,400.6	4.1	20.3	획지합병	
	A4-2		C10 식료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2,763.0			9.2			
	A4-3	A4-2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8,140.0	감) 851.5	27,288.5	20.4	18.2		
	A5-1	A5-1	C10 식료품 제조업	5,620.0	감) 316.5		4.1	2.0	A5-1 획지분할	
		A5-2	C10 식료품 제조업					1.5	A5-1 획지분할	
	A5-2	A5-3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10 식료품 제조업	4,092.0	증) 723.5		3.0	1.2	A5-2 획지분할	
		A5-4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10 식료품 제조업					2.0	A5-2 획지분할	
	기 타 (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녹지용지시설)				29,540.0	증) 351.3	29,891.3	21.4	20.0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

■ 토지이용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변경	
총 면 적		138,070.0	증) 11,614.0	149,684.0	100.0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108,530.0	증) 11,262.7	119,792.7	78.6	80.0	
지 원 시 설 용 지	소 계	2,394.0	증) 35.1	2,429.1	1.7	1.6	
	근린생활시설	1,024.0	감) 35.1	988.9	0.7	0.6	
	주 차 장	913.0	증) 69.5	982.5	0.7	0.7	주차장 2개소
	관 리 실	457.0	증) 0.7	457.7	0.3	0.3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17,066.0	감) 370.0	17,436.0	12.4	11.7	
	도 로	16,588.0	감) 47.4	16,540.6	12.0	11.1	중로1개소, 소로7개소
	우·폐수 처리장	478.0	감) 1.7	476.3	0.4	0.3	
	유수지	-	증) 419.1	419.1	-	0.3	녹지시설용지 내 시설세분
녹 지 시 설 용 지	소 계	10,080.0	감) 53.8	10,026.2	7.3	6.7	
	완충녹지	10,080.0	감) 53.8	10,026.2	7.3	6.7	

나. 토지이용계획도 : 게재생략

■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교통시설계획

1) 도로

■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8	1,391.3	16,540.6	5	527.4	5,322.0	1	668.9	10,328.8	2	178.8	889.8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1	668.9	10,328.8	-	-	-	1	668.9	10,328.8	-	-	-
소로	7	722.4	6,211.8	5	543.6	5,322.0	-	-	-	2	178.8	889.8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665.5	381-2답	329전	일반도로	농공단지		
변경	중로	2	1	15	집산도로	668.9	381-2답	329전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73.4	중로2-1	358-2답	일반도로	농공단지		
변경	소로	1	1	10	국지도로	76.6	중로2-1	358-2답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10.0	중로2-1	385-1전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92.3	중로2-1	337-3전	일반도로	농공단지		
변경	소로	1	3	10	국지도로	105.3	중로2-1	337-3전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201.4	중로2-1	430도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50.3	중로2-1	329-3입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131.6	소로1-2	산47입	일반도로	농공단지		
변경	소로	3	1	6	국지도로	132.2	소로1-2	산47입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소로	3	2	3	특수도로	53.9	소로1-3	소로1-1	보행자 전용도로	농공단지		
변경	소로	3	2	3	특수도로	46.6	소로1-3	소로1-1	보행자 전용도로	농공단지		

2) 주차장 계획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B1-1	주차장	노 외 주차장	월미동 329-3번지 일원	475	증) 81.9	556.9		
변경	B2-1	주차장	노 외 주차장	월미동 367-2번지 일원	438	감) 12.4	425.6		

나. 공간시설계획

1)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D1-1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산47번지 일원	740	증) 13.5	753.5		
변경	D1-2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산47번지 일원	1,077	감) 416.1	660.9		유수지 419.1㎡ 공공시설 용지로 세분
변경	D1-3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산47번지 일원	1,423	감) 393.0	1,030.0		
변경	D1-4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산47번지 일원	4,523	증) 416.7	4,939.7		
변경	D1-5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산47번지 일원	2,214	증) 225.3	2,439.3		
변경	D1-6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산47번지 일원	103	증) 99.8	202.8		

다. 방재시설계획

1) 유수지

■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D1-2	유수지	저류 시설	월미동 358-2번지	425	감) 425.0	-		
변경	C1-2	유수지	저류 시설	월미동 358-2번지	-	증) 419.1	419.1		

라. 수질오염방지시설

1) 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위 치	면적(m ²)			최 결정 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C1-1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폐수 처리장	월미동 358-2번지	478	감) 1.7	476.3		

8. 농공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가. 용수공급계획

구 분		용수량(m ³ /일)	비고
총 계		672.56	
산업시설용지 공업용수		566.12	
소 화 용 수		50.00	
생활용수	계	56.44	
	공장용지 종업원 생활용수	53.29	
	지원시설의 상근인구 생활용수	0.50	
	농공단지 이용인구 생활용수	2.65	

나. 오·폐수처리계획

구 분		발생량 (m ³ /일)	비고
총 계		363.71	
산업 시설 용 지 공 업 폐 수		317.89	
생활오수	계	45.82	
	공장용지입주업체 종업원	21.31	
	급식시설	15.99	
	지원시설용지에 의한 상근인구	2.12	
	공장용지 및 지원시설 이용인구	6.40	

다. 전력공급계획

- 연간전력수요량 23,580MWh/년 (최대 부하 5,151.82kw)

라. 통신시설계획

- 수요량 556.65 회선

마. 에너지 공급계획

- 연료수요량 4,600.41kl/year

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사항

□ 세분된 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 계	138,070.0	-	149,684.0	100.0	
관 리 지 역	138,070.0	증) 11,614.0	149,684.0	100.0	
보 전 관 리 지 역	-	-	-	-	
생 산 관 리 지 역	-	-	-	-	
계 획 관 리 지 역	138,070.0	증) 11,614.0	149,684.0	-	

□ 도시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결정 조서

1)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공주(005)	월미농공단지	산업개발진흥지구	월미동	138,070.0		
변경	공주(005)	월미농공단지	산업개발진흥지구	월미동	149,684.0		

□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주(005)	월미농공단지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형	공주시 월미동 산47번지 외 102필지	138,070	증) 11,614.0	149,684.0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도시관리계획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665.5	381-2답	329전	일반도로	농공단지		
변경	중로	2	1	15	집산도로	668.9	381-2답	329전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73.4	중로2-1	358-2답	일반도로	농공단지		
변경	소로	1	1	10	국지도로	76.6	중로2-1	358-2답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10.0	중로2-1	385-1전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92.3	중로2-1	337-3전	일반도로	농공단지		
변경	소로	1	3	10	국지도로	105.3	중로2-1	337-3전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201.4	중로2-1	430도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50.3	중로2-1	329-3입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131.6	소로1-2	산47입	일반도로	농공단지		
변경	소로	3	1	6	국지도로	132.2	소로1-2	산47입	일반도로	농공단지		
기정	소로	3	2	3	특수도로	53.9	소로1-3	소로1-1	보행자 전용도로	농공단지		
변경	소로	3	2	3	특수도로	46.6	소로1-3	소로1-1	보행자 전용도로	농공단지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B1-1	주차장	노 외 주차장	월미동 329-3번지 일원	475	증) 81.9	556.9		
변경	B2-1	주차장	노 외 주차장	월미동 367-2번지 일원	438	감) 12.4	425.6		

3) 공간시설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 결정 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D1-1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산47번지 일원	740	증) 13.5	753.5		
변경	D1-2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산47번지 일원	1,077	감) 416.1	660.9		유수지 419.1m ² 공공시설 용지로 세분
변경	D1-3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산47번지 일원	1,423	감) 393.0	1,030.0		
변경	D1-4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산47번지 일원	4,523	증) 416.7	4,939.7		
변경	D1-5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산47번지 일원	2,214	증) 225.3	2,439.3		
변경	D1-6	녹지	완충녹지	월미동 산47번지 일원	103	증) 99.8	202.8		

4) 방재시설

■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 결정 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D1-2	유수지	저류 시설	월미동 358-2번지	425	감) 425.0	-		
변경	C1-2	유수지	저류 시설	월미동 358-2번지	-	증) 419.1	419.1		

5) 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 결정 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C1-1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폐수 처리장	월미동 358-2번지	478	감) 1.7	476.3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사항**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산업시설용지**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119,792.7	108,530.0	증) 11,262.7	119,792.7		
A1	1	1	9,850.0	월미동 384번지 일원	9,864.0	감) 14.0	9,850.0	
A2	1	1	7,172.2	월미동 364-1번지 일원	7,174.0	감) 1.8	7,172.2	
A3	1	1	34,962.4	월미동 산47번지 일원	33,023.0	감) 348.0	32,675.0	
	2	2		월미동 산48-1번지 일원	2,234.0	증) 53.4	2,287.4	
A4	1	1	57,689.1	월미동 산45-5번지 일원	5,620.0	증) 12,017.6	30,400.6	
	2			월미동 산45-5번지 일원	12,763.0			
	3	2		월미동 산57-1번지 일원	28,140.0	감) 851.5	27,288.5	
A5	1	1	10,119.0	월미동 336-7번지 일원	5,620.0	감) 316.5	3,056.6	
		2					2,246.9	
	2	3		월미동 329-3번지 일원	4,092.0	증) 723.5	1,853.7	
		4					2,961.8	

■ **지원시설용지**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2,429.1	2,394	증) 35.1	2,429.1		
B1	1	1	556.9	월미동 329-1번지 일원	475	증) 81.9	556.9	
B2	1	1	425.6	월미동 367-2번지 일원	438	감) 12.4	425.6	
		2	457.7	월미동 366-2번지 일원	457	증) 0.7	457.7	
		3	988.9	월미동 368번지 일원	1,024	감) 35.1	988.9	

■ **공공시설용지**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895.4	478	-	895.4		
C1	1	1	476.3	월미동 358-2번지 일원	478	감) 1.7	476.3	
C1	2	2	419.1	월미동 358-2번지 일원	-	증) 419.1	419.1	녹지시설용지내 저류시설 세분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산업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산업시설용지		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의 공장 및 부대시설 (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경우 제외)														
A1-1 ~ A5-4	충남 공주시 월미동 산47번지 일원	용 도	<table border="1"> <thead> <tr> <th>중분류(코드번호)</th> <th>업 종</th> </tr> </thead> <tbody> <tr> <td>C10</td> <td>식료품 제조업</td> </tr> <tr> <td>C25</td> <td>금속가공제품제조업</td> </tr> <tr> <td>C26</td> <td>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td> </tr> <tr> <td>C30</td> <td>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td> </tr> <tr> <td>C31</td> <td>기타 운송장비 제조업</td> </tr> <tr> <td>C39</td> <td>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td> </tr> </tbody> </table>	중분류(코드번호)	업 종	C10	식료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중분류(코드번호)	업 종																
C10	식료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53조)														
		용적률	150% 이하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58조)														
B2-2 ~ B2-3	지원시설용지	높 이	-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공주시 월미동 368-5번지 일원	◦ 진입도로 (15m) 지정	◦ 설치위치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10. 수용·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 별첨.

11. 관계서류는 공주시청 기업유치과(041-840-23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별첨]

토 지 조 서

<지목별 현황>

구분		계	과수원	구거	답	대지	도로	임야	장	전	체
필지수	기정	103	2	16	20	3	14	22	-	25	1
	변경	105	2	7	20	3	12	22	12	25	2
면적 (㎡)	기정	138,070.0	1,724.0	2,820.0	28,201.0	1,678.0	1,641.0	67,100.0	-	33,613.0	1,293.0
	변경	149,684.0	1,724.0	724.0	28,201.0	1,678.0	1,090.0	78,375.0	2,647.0	33,952.0	1,293.0
	증감	11,614.0	-	-2,096.0	-	-	-551.0	11,275.0	2,647.0	339.0	-
구성비 (%)	기정	124.3	1.3	2.0	20.4	1.2	1.2	48.6	24.3	24.3	1.0
	변경	100.0	1.2	0.5	18.8	1.1	0.7	52.3	1.8	22.7	0.9

<지목별 편입조서>

번호	동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증감	소유자	주소	비고
					기정	확정				
1	월미	334-1	과	962	962	962.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2	월미	336-5	과	762	762	762.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3	월미	334-2	구	10	10	10.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4	월미	336-2	구	271	271	271.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5	월미	336-3	구	63	63	63.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6	월미	337-4	구	23	23	23.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7	월미	358-1	구	241	241	241.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8	월미	361-4	구	20	20	20.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9	월미	362-1	구	96	96	96.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	월미	420-1	구	176	176	176.0	-	국(농수산부)		지목변경 및 소유자변경
10	월미	420-1	장	176	176	176.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	월미	420-2	구	76	76	76.0	-	국(농수산부)		지목변경 및 소유자변경
11	월미	420-2	장	76	76	76.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번호	동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증감	소유자	주소	비고
					기정	확정				
-	월미	420-3	구	383	383	383.0	-	국(농수산부)		지목변경 및 소유자변경
12	월미	420-3	장	383	383	383.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	월미	420-4	구	327	327	327.0	-	국(농수산부)		지목변경 및 소유자변경
13	월미	420-4	장	327	327	327.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	월미	420-5	구	513	513	513.0	-	국(농수산부)		지목변경 및 소유자변경
14	월미	420-5	장	513	513	513.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	월미	420-6	구	272	272	272.0	-	국(농수산부)		지목변경 및 소유자변경
15	월미	420-6	장	272	272	272.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	월미	420-7	구	12	12	12.0	-	국(농수산부)		지목변경 및 소유자변경
16	월미	420-7	장	12	12	12.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	월미	420-8	구	137	137	137.0	-	국(농수산부)		지목변경 및 소유자변경
17	월미	420-8	장	137	137	137.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외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	월미	421-1	구거	200	200	200.0	-	국(건설부)		지목변경 및 소유자변경
18	월미	421-1	장	200	200	200.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19	월미	328-2	답	327	327	327.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20	월미	330-6	답	734	734	734.0	-	공주시		
21	월미	331	답	2,112	2,112	2,112.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22	월미	332	답	2,040	2,040	2,04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23	월미	333	답	2,162	2,162	2,162.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24	월미	336	답	197	197	197.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25	월미	358-2	답	2,192	2,192	2,192.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26	월미	359-1	답	2,813	2,813	2,813.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27	월미	360	답	3,023	3,023	3,023.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28	월미	360-1	답	173	173	173.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29	월미	360-2	답	1,984	1,984	1,984.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30	월미	363	답	3,302	3,302	3,302.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번호	동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증감	소유자	주소	비고
					기정	확정				
31	월미	364-1	답	1,289	1,289	1,289.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32	월미	366-1	답	1,564	1,564	1,564.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33	월미	366-2	답	1,950	1,950	1,950.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34	월미	366-3	답	1,891	1,891	1,891.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35	월미	380-2	답	2	2	2.0	-	국(건설교통부)		
36	월미	381-3	답	59	59	59.0	-	국(건설교통부)		
37	월미	382-4	답	294	294	294.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외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38	월미	382-6	답	93	93	93.0	-	국(건설교통부)		
39	월미	334	대	619	619	619.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40	월미	336-1	대	328	328	328.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41	월미	365-1	대	731	731	731.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42	월미	336-4	도로	3	3	3.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43	월미	336-6	도로	31	31	31.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44	월미	337-5	도로	40	40	40.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	월미	337-7	도로	195	58	-	-	공주시		337-7 번지에서 분할 → 337-9번지
45	월미	337-9	도로	58	58	58.0	-	공주시		
46	월미	358-3	도로	53	53	53.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47	월미	359-2	도로	69	69	69.0	-	공주시		
48	월미	363-2	도로	99	99	99.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49	월미	364-2	도로	99	99	99.0	-	공주시		
50	월미	419-1	도로	185	185	185.0	-	국(건설부)		
-	월미	423	도로	69	69	-	-	국(건설부)		지목변경 및 소유자변경
51	월미	423	장	69	69	69.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	월미	423-1	도로	13	13	-	-	국(건설부)		지목변경 및 소유자변경
52	월미	423-1	장	13	13	13.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53	월미	423-2	도로	206	206	206.0	-	국(건설부)		

번호	동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증감	소유자	주소	비고
					기정	확정				
54	월미	424-1	도로	47	47	47.0	-	국(건설부)		
-	월미	430	도로	699	669	-	-	국(국토해양부)		430번지 분할 및 지목변경
55	월미	430-1	장	469	469	469.0	-	국(국토해양부)		
56	월미	430-2	도로	200	200	200.0	-	국(국토해양부)		
57	월미	329-2	임야	331	331	331.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58	월미	329-3	임야	3,666	3,666	3,666.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59	월미	361-1	임야	145	145	145.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60	월미	산47	임야	13,344	13,048	13,048.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61	월미	산47-1	임야	1,914	1,914	1,914.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62	월미	산47-2	임야	529	529	529.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63	월미	산48-1	임야	3,817	3,817	3,817.0	-	우리산업개발 주식회사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340-10 덕성상가 201	
64	월미	산48-3	임야	13,337	13,337	13,337.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65	월미	산52-1	임야	6,347	6,347	6,636.5	289.5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지적확정 측량결과 면적증가
66	월미	산53-4	임야	2,652	2,652	2,652.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67	월미	산53-5	임야	3,967	3,967	3,967.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68	월미	산53-10	임야	1,117	1,117	1,117.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69	월미	산53-11	임야	614	614	1,013.4	399.4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지적확정 측량결과 면적증가
70	월미	산53-12	임야	458	458	458.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71	월미	산53-13	임야	1,562	1,562	1,562.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72	월미	산53-14	임야	2,325	2,325	2,325.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73	월미	산53-15	임야	1,697	1,697	1,697.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외 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74	월미	산53-16	임야	200	200	200.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외 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75	월미	산56-3	임야	1,011	1,011	1,224.2	213.2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외 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지적확정 측량결과 면적증가
76	월미	산56-4	임야	627	627	732.9	105.9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외 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지적확정 측량결과 면적증가

번호	동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증감	소 유 자	주 소	비고
					기정	확정				
-	월미	산57-1	임야	7,736	6,952	-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지적확정 측량결과 면적정정
77	월미	산57-1	임야	17,219	-	17,219.0	10,267.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	월미	산58-1	임야	2,380	784	-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산58-1 번지에서 분할 → 산58-3
78	월미	산58-3	임야	2,380	784	784.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79	월미	210-1	전	2,063	2,063	2,063.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80	월미	211-1	전	645	645	645.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81	월미	311	전	1,170	1,170	1,17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82	월미	329	전	1,739	1,739	1,739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83	월미	330	전	2,850	2,850	2,850.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84	월미	330-1	전	783	783	783.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85	월미	330-2	전	526	526	526.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86	월미	330-3	전	96	96	96.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87	월미	330-4	전	1,418	1,418	1,418.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88	월미	330-5	전	235	235	235.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89	월미	334-3	전	802	802	802.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90	월미	335	전	1,613	1,613	1,613.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91	월미	336-7	전	3,399	3,399	3,399.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92	월미	337-8	전	1,042	1,042	1,042.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외 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93	월미	362-3	전	754	754	754.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94	월미	363-1	전	1,349	1,349	1,349.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95	월미	365	전	1,597	1,597	1,597.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96	월미	366-4	전	641	641	641.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	월미	367-2	전	834	834	-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외 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367-2 분할→ 367-3 정정
97	월미	367-3	전	1,173	1,173	1,173.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외 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98	월미	368-5	전	1,449	1,449	1,449.0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빌딩 19층	

공주시 공고 제 2011-692호

「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5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마련한 농기계임대사업 설치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반영하고,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기계대여은행을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용어를 일원화(안 제3조)

- “농기계대여은행”과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혼용되었던 용어를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일원화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를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두도록 함

나. 농기계사용 임대차 계약서 작성(안 제8조)

- 세부적인 계약조건을 명시한 “농기계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알리고 사용조건을 이행하도록 함

다. 임대기준 일부 변경(안 제9조)

-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 유지를 위해 사용일전 2개월 이내에서 임대 신청을 하도록 함
-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공주시예 주민등록이 된 사람으로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정함
- 원활한 임대현황 관리를 위해 입출고 시간을 17:00로 명문화

라.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 운영 기준 마련(안 제10조)

- 운반서비스를 관리요원과 사전협의하여 신청토록 하고 운반이 가능한 기종 및 지역을 포함하는 세부 운영기준을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에 공고하도록 정함

마.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 운반요금 기준 마련(안 제11조 제1항, 별표2)

- 기관장이 공고한 지역 및 기종 등에 해당되는 경우 운반서비스를 제공하고 편도기준 2만원의 운반요금을 부과하도록 함

바. 임대계약을 위반 하는 임차인에 대한 제한 규정 구체화(안 제17조)

- 농기계를 3회이상 깨끗하게 청소·세척하지 않고 반환하거나 임대기간을 3회이상 초과하여 반납하는 경우 등에 대해 임대계약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 할 수 있도록 구체화

사.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
- 임대농기계 선정·구입 및 임대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기술보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농기계담당)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내산목천길 52-15(도천리 1-2번지)

우편번호 : 314-862 전 화 : 041-840-2256 FAX : 041-840-2426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공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시 분점을 둘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 (이하 “임대사업” 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주시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 농기계” (이하 “농기계” 라 한다)란 본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운반서비스”란 공주시가 임대 농기계를 임차인에게 직접 운반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5. “운반요금”이란 임대 농기계를 운반해 주는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주시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으로 말하며,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범위) 이 조례에 의한 임대사업의 지원 및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임대사업의 지원)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② 임대사업 운영기관의 장(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기관장은 매년 임대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 실행,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임대용 농기계가 선정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농기계 내용연수 경과, 망실·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요원)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관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지정 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임대사업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임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계약 및 교육) 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농기계사용 임대차 계약서” 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관리요원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농업인안전공제” 에 가입하도록 한다.

- 제9조(임대기준) ① 농기계의 임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일전 2개월 이내에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사용료를 입금한 사용자에게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농기계 대수 및 임대기간은 1농가당 기종별 1대 기준으로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으로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 ④ 시장은 제3항의 사용자를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⑤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부터 입고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출고시간은 사용전일 17:00부터 시작하여 반납일 17:00까지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⑥ 농기계의 입출고 시간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한다.

- 제10조(운반서비스 운영 기준) ① 운반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운반 가능여부·일정 등을 관리요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② 운반서비스의 상하차 장소는 신청지역 마을회관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기관장은 운반이 가능한 기종 및 지역을 포함하는 세부 운영기준을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임대료 등) ① 임대료는 별표 1의 임대료 징수 기준에 의하며, 운반요금은 별표 2의 운반서비스 운반요금 징수 기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과한다.

- ② 임대료 및 운반요금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 에서 예시하고 있는 산정기준을 감안하고 징수하여 임대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동일한 기종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최종구입가격을 준용하여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 ③ 임대료 및 운반요금을 변경하는 경우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는 임대료 및 운반요금을 농기계 출고 전까지 공주시세입금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⑤ 사용 후 반환일시에 농기계를 반환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⑥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그 밖의 농기계 운반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 한다.

제12조(임대료의 감면) 시장은 재해·재난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할 경우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임대료 등의 반환) 납부된 임대료 및 운반요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다.

- 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 2. 농기계의 출고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14조(임대계약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2. 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 3. 농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았을 경우
- 5. 임대료 및 운반요금을 체납한 경우

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남은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가 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농기계의 반환)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종료 후 농기계를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세차불량 등으로 3회 이상 지적받을 경우 사용자에게 임대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③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제17조(임대계약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임대기간을 3회 이상 초과하여 반납한 사실이 있는 사람.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지연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3.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제1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18조(비치대장)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다.

1.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3. 임대료 및 운반요금 수납대장(별지 제5호 서식)
4. 임대계약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제19조(농기계 처분)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기계수리비가 농기계평가(잔존)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쟁 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20조(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농업인단체 임원, 농업인(단, 여성농업인 1인 이상 포함), 농기계전문가(농과관련 교수 및 교사, 연구전문가 등), 관계기관 임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기계업무담당지도사로 한다.

제21조(위원회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2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사업계획서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2. 임대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3. 임대료 및 운반요금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24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농기계임대사업)」와 「공주시 재무 회계 규칙」 및 「공주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임대료 징수 기준 (제11조제1항 관련)

(단위: 천원/1일)

농기계 구입시 단가	사용료
300만원 미만	5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10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5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20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25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30
2,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35
3,000만원 이상	구입단가의 3/1000 (백원 단위는 절사)

[별표 2]

운반서비스 운반요금 징수 기준(편도요금) (제11조제1항 관련)

(단위 : 천원/회)

운송서비스 대상 지역	운반요금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고한 지역	20

[별지 제1호 서식]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 (제8조제1항 관련)

【임대재산의 표시】

농 기계 명			
부속작업기		부속자재	

위 재산에 대하여 임대인을 “갑” 으로 하고, 임차인을 “을” 로 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을은 임대재산을 아래의 계획에 따라 농업용 목적으로 사용한다.

작업장소			
작업내용		작업면적	m ²

제2조(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 임대기간 및 임대료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임대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			
임 대 료					
농기계 운반서비스	구분	장소	희망시간	거리(km)	요금(원)
	출고				
	입고				

제3조(임대료 등의 납부) 임대료는 농기계 출고 전까지 공주시세입금 수납 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및 변상) ① 을은 임대기간 중 농기계를 안전하고 청결하게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등)를 부담하여야 하며, 농기계가 파손되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제18조 관련)

관리번호	
------	--

구입금액			
계	국 비	시·도비	시·군비

구입연월일		형 식 명	
규 격		제 조 번 호	
성 능		내 용 연 한	
주요특징			
제조회사 및 구입처	회 사 명		
	전 화 번 호		
	홈페이지		

사 진	
임대 농기계	관리번호 명판

주 요 관 리 내 역			
일 시	주요 문제점	조치결과	담당자 확인

[별지 제5호 서식]

임대료 및 운반요금 수납대장 (제18조 관련)

(단위: 천원)

일 련 번 호	계 약 연 월 일	임차인		기 종 명	임 대 기 간 (일)	감 면 액	임대료			결 재			비 고
		성 명	주 소				농 기 계 임 대 료	운 반 요 금	계	담 당 자	담 당	과 장	

※ 임대차인은 임대료 수납확인필증을 수납일로부터 5년간 각각 보관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임대계약제한자 관리대장 (제18조 관련)

일 련 번 호	처 분 연 월 일	처분 대상자			위반조항 및 위반내용	처분내용	사 용 제 한 기 간	결 재			비 고
		성 명	주 소	연 락 처				담 당 자	담 당	과 장	

공인 폐기 공고

공주시 공인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을 폐기하고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5일

공 주 시 장

1. 폐기공인명 : 공주시과세표준심의위원회위원장의인
및 공주시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위원장의인
2. 공인 폐기 사유 :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의거 ‘공주시과세표준심의위원회 및 ‘공주시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공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됨에 따른 공인 폐기
3. 공인 폐기일자 : 2011. 7. 15.
4. 폐기공인 인영

부서명	공인명	인 영	규 격	비 고
세무과	공주시과세표준 심의위원회위원장의인		2.1cm×2.1cm (정방형)	
“	공주시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위원장의인		“	

공인 신조 공고

공주시 공인조례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을 등록·교부하고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5일

공 주 시 장

1. 공인 신조 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신설 및 명칭 변경
2. 공인 신조 일자 : 2011. 7. 15.
3. 신조 공인 인영

부서명	공 인 명	규 격 (재질/크기/글자체)	인 영	비 고
시정담당관	공주시 시정담당관 분임경리관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	공주시 시정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부서명	공 인 명	규 격 (재질/크기/글자체)	인 영	비 고
시정담당관	공주시 시정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기획담당관	공주시 기획담당관 분임경리관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	공주시 기획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	공주시 기획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인사담당관	공주시 인사담당관 분임경리관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	공주시 인사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	공주시 인사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부서명	공 인 명	규 격 (재질/크기/글자체)	인 영	비 고
감사담당관	공주시 감사담당관 분임경리관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	공주시 감사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	공주시 감사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정보담당관	공주시 정보담당관 분임경리관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	공주시 정보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	공주시 정보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사회과	공주시 사회과 분임경리관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부서명	공 인 명	규 격 (재질/크기/글자체)	인 영	비 고
사회과	공주시 사회과 분임물품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	공주시 사회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	공주시 사회복지기 금운용관인 사회과	목재 2.0×2.0 훈민정음체		
복지과	공주시 복지과 분임경리관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	공주시 복지과 분임물품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	공주시 복지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민원과	민원과 공주시장인 일반민원전용	목재 2.4×2.4 훈민정음체		

부서명	공 인 명	규 격 (재질/크기/글자체)	인 영	비 고
민원과	민원과 공주시장인 가족관계등록민원전용	목재 2.4×2.4 훈민정음체		
“	공주시 민원과 분임경리관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	공주시 민원과 분임물품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	공주시 민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경제과	공주시 경제과 분임경리관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	공주시 경제과 분임물품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	공주시 경제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부서명	공 인 명	규 격 (재질/크기/글자체)	인 영	비 고
문화체육과	공주시 문화체육과 분임경리관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	공주시 문화체육과 분임물품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	공주시 문화체육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관광과	공주시 관광과 분임경리관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	공주시 관광과 분임물품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	공주시 관광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5도2촌과	공주시 5도2촌과 분임경리관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부서명	공 인 명	규 격 (재질/크기/글자체)	인 영	비 고
5도2촌과	공주시 5도2촌과 분임물품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	공주시 5도2촌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문화재과	공주시 문화재과 분임경리관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	공주시 문화재과 분임물품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	공주시 문화재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산림과	공주시 산림과 분임경리관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	공주시 산림과 분임물품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부서명	공 인 명	규 격 (재질/크기/글자체)	인 영	비 고
산림과	공주시 산림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도시과	공주시 도시과 분임경리관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	공주시 도시과 분임물품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	공주시 도시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허가과	공주시 허가과 분임경리관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	공주시 허가과 분임물품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	공주시 허가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부서명	공 인 명	규 격 (재질/크기/글자체)	인 영	비 고
교통과	공주시 교통과 분임경리관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	공주시 교통과 분임물품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	공주시 교통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환경과	공주시 환경과 분임경리관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	공주시 환경과 분임물품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	공주시 환경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청소과	공주시 청소과 분임경리관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부서명	공 인 명	규 격 (재질/크기/글자체)	인 영	비 고
청소과	공주시 청소과 분임물품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	공주시 청소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수도과	공주시 수도과 분임경리관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	공주시 수도과 분임물품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	공주시 수도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토지과	토지과 공주시장인 민원전용	목재 2.4×2.4 훈민정음체		
“	공주시 토지과 분임경리관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부서명	공 인 명	규 격 (재질/크기/글자체)	인 영	비 고
토지과	공주시 토지과 분임물품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	공주시 토지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세종특별자치시출범 실무준비팀	공주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실무준비팀 분임경리관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	공주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실무준비팀 분임물품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	공주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실무준비팀 일상경비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관광경영사업소	공주시 관광경영 사업소장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	공주시 관광경영사업소 징수관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부서명	공 인 명	규 격 (재질/크기/글자체)	인 영	비 고
관광경영사업소	공주시 관광경영사업소 경리관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	공주시 관광경영사업소 물품관리관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	공주시 관광경영사업소 지출원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	공주시 관광경영사업소 수입금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	공주시 관광경영사업소 분임물품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	공주시 관광경영사업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도서관	공주시 도서관장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부서명	공 인 명	규 격 (재질/크기/글자체)	인 영	비 고
도서관	공주시 도서관 징수관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	공주시 도서관 경리관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	공주시 도서관 물품관리관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	공주시 도서관 지출원인	목재 2.0×2.0 훈민정음체		
“	공주시 도서관 수입금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	공주시 도서관 분임물품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	공주시 도서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목재 1.8×1.8 훈민정음체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공고

공주시 공인조례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을 등록·교부하고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5일

공 주 시 장

1.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신설 및 명칭변경
2. 사용개시일 : 2011. 7. 15.
3. 등록 공인 인영

부서명	공 인 명	구 분	규 격	인 영	비 고
관광경영사업소	공주시관광경영사업소장인	신조·등록	2.0cm×2.0cm (정방형)		전자이미지
도서관	공주시도서관장인	신조·등록	2.0cm×2.0cm (정방형)		전자이미지